
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 등에 따름

① 이전지역인재(대구·경북)의 범위

- 대구·경북에 소재한 대학교(대학원 제외)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- 단,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(예정)한 자는 제외
- 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 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 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 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

②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학교의 범위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(대구·경북)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- 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소재 지역대학에서 전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*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(대구·경북)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이전지역 인재로 포함
- ③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④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- ⑤ 이전지역(대구·경북)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- *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③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인재의 범위

- ① 「②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학교의 범위」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
- ②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학교*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중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*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③ 학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대구·경북 안으로 이전한 경우 : 이전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대구·경북 밖으로 이전한 경우 :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〈예 시〉

〈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〈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〉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
〈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〈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〉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〈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〈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〈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